

축산의 경영관업리

민 경 래
퓨리나 코리아 경영지도부장

(2) 종계의 감가 상각

종계는 산란계 종계와 부로일려 종계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란계 종계의 감가상각처리 방법은 지난회에서 설명한바 있는 산란계의 감가상각 원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단지 감가상각액이 산란계의 육성비와 산란계 종계 및 부로일려 종계의 육성비가 다소다를 것임으로 금액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산란계의 경제성 산란 기간이나, 산란계 종계 및 부로일려 종계의 경제성 산란기간이 대동소이 함으로 감가상각 처리방법이 산란계의 감가상각 처리방법과 같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2. 고정자산(固定資產)

지금까지 기업의 자산중 유동자산에 대하여 설명했고 다음으로 고정자산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고정자산이란 전에 간단히 설명한바와 같이 기업의 자산중 현금화되는 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대체 건물 시설등과 같이 기업목적에 따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한 자산을 말한다. 즉 고정자산이란 장기간에 걸친 기업운영을 통하여 그 투자된 금액이 현금화될 자산인 것이다. 고정자산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구분한다.

1) 유형고정자산(有形固定資產)

2)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產)

3) 투자자산(投資資產)

1) 유형고정자산

유형고정자산이란 형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비자산(設備資產)을 말하며 고정자산(固定資產)의 대표적인 것이다.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토지(土地)

기업운영에 필요한 대지를 말한다. 축산업의 경우에는 농장의 토지 및 농장소비 목적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의 농토등이 이에 속한다. 자기 소유의 농토일지라도 자기의 사생활의 소비나 축산농장 소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경작을 하는 농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건물(建物)

건물 또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투자된 건물을 말하며 축산업의 경우에는 계사, 창고, 관리인 숙소 및 사무실 건물등이 이에 속한다. 만일 농장주 개인의 사택(私宅)이 농장구내에 위치할 경우 농장주의 사택은 대차대조표상의 고정자산으로서의 건물에서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 그 좋은 예로서 점포와 주택이 같은 건물로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기업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총토지나 건물의 면적중에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사무실이나 점포 및 창고등의 면적만을 구분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여 기록하는것이 타당하다

(3) 구축물(構築物)

기업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정규건물

이 아닌 축조물을 말하며 축산업의 경우에는 계분창고 플랫크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교량 등이 이에 속한다.

(4) 기계장치

생산공장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을 말하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계란선별기 상수도용 모터 펌프등을 들 수 있겠고 자가배합사료를 굽여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분쇄기 및 배합기가 이에 속한다.

(5) 차륜 및 운반기구

기업체소유의 승용차, 트럭, 경운기, 농경작업용전인차 손수레등이 이에 속한다.

(6) 소농구(小農具)

삽, 팽이, 호미 및 기타 금액이 적은 농업용 기구등이 이에 속한다.

(7) 기구 및 비품

축산업의 경우에는 케이지, 굽이기, 굽수기 부리자르기, 주사기 및 양돈업의 경우에는 어미 돼지의 분만틀등이 이에 속한다.

(8) 가구집기

주로 사무실용 책상 의자 소파 및 캐비넷·금고등이 이에 속한다.

(9) 건설 가계정

현재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이나 시설중인 기계 설비등에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을 집계한 계정으로서 건축이나 시설비가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계정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설 가계정이란 제정명칭을 사용하며 후일 건축이나 시설비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까지 지출된 금액을 마감하여 건물 또는 기계장치등의 해당 계정으로 이월하여 처리한다.

2)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產)

무형고정자산이란 문자 그대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고정자산을 말하며 형태는 없으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무형고정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며 무형고정자산이 기업운영과정 중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각처리하여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처리하는 것과 같이 비용으로서 처리하며 상각처리를 위한 내용년수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처리

상 유형고정 자산의 감가상각처리와 다른점은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잔존가액을 인정하나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처리에서는 잔존가액이 없는 것이다.

(1) 영업권(내용년수 : 5년)

영업권이란 거래고객이 많고 사업관계자의 해당기업에 대한 평이 좋아 성업중인 사업체의 경우 타인에게 그 사업체를 매도한다고 할 때 그기업체의 실질적인 순재산액보다 많은 대금을 지불하고 제3자가 매수하였다면 실질적인 순재산액과 매수대금과의 차액은 그사업체가 다른 동종의 사업체보다 초과 수익력이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인수한 것이다 이 때 차액이 바로 영업권이며 이 영업권은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대금을 지불한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년간에 걸쳐서 경율법에 의하여 상각되어 비용으로서 처리하는 것이다.

내용년수인 5년이 경과된뒤에는 그 사업체의 영업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인 무형고정자산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이를 또한 세법상으로 감가상각을 인정하며 내용년수 또한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 특허권: 내용년수 10년

(3) 상표권: " 10 "

(4) 의장권: " 7 "

(5) 실용신안권: " 5 "

(6) 어업권: " 10 "

(7) 광업권: " 20 "

(8) 수리권: " 15 "

(9) 개발권: " 3 "

무형고정자산에는 위에 열거한 것들이 포함되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영업권”만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겠다.

3) 투자자산(投資資產)

기업체 소유의 자본중 여유가 있는 경우에 자기 기업외부에 투자의 목적으로 투하된 자산을 투자자산이라하며 이 투자자산은 그 투

자 목적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다른 사업을 지배하기 위한 투자의 경우

가) 관계회사 유가증권 계정

자기 기업 외부에 투자한 사업체가 법인체인 경우 그 회사의 주식 또는 사채(社債)를 장기간 소유할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을 관계회사 유가증권이라 한다.

나) 관계회사 출자금 계정

자기 기업 외부에 투자한 사업체가 법인체가 아닌 경우 그 기업에 투자한 출자금을 말한다. 법인체인 경우에는 위(가)항에 속하며 법인체인 경우에는 출자금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개인업체인 비법인체의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지를 않음으로 출자금계정으로 처리한다.

(2) 이식(利殖)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가) 투자유가증권 계정

이식 수입을 목적으로 다른 법인체의 주식 사채(社債) 또는 지방채(地方債)나 국채에 투자한 자산을 말한다.

나) 투자 부동산 계정

임대(賃貸)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자산을 말한다.

다) 장기대여금 계정

회수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으로 기업 외부에 대여한 자산을 말한다.

이상 설명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기업자산 중 고정자산에 속하는 자산이나 축산업의 경우에는 별로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나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간단히 설명하였다.

3. 이연자산(移延資產)

이연자산이란 기업자산 중 앞에서 설명한 유동자산이나 고정자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성질의 자산을 말하며 이연자산은 기업운영 과정 중에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처리와 같이 상각 처리하여 이용하는 자산을 말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선불비용

이연자산에 속하는 선불비용은 유동자산 중의 선불비용과는 다르다 즉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상각(償却)되어 비용화되는 자산을 말한다.

2) 주식 발행비

법인체 조직의 기업에서 자본조달을 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에 지출된 비용을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주식발행비란 이연계정에 포함시켜 몇년동안에 걸쳐 분할상각하여 매회계 기관마다 비용 처리를 한다. 이 때 고정자산과 다른 것은 잔존가액이 없이 주식 발행비 전액을 상각처리하는 것이다. 잔존가액이 없는 것은 다음에 설명할 모든 이연자산에 속하는 것 전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사채발행차금(社債發行差金)

기업의 목적에 따라 외부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지출된 비용이나 또는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채를 할인 처분 했을 경우의 할인료 등이 이에 속한다.

4) 개발비(開發費)

기술혁신이나 경영조직개선 시장개척등의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도 금액이 많을 경우 이연자산에 포함시켰다가 매회계 기간마다 분할상각하여 비용으로서 처리한다.

5) 창업비(創業費)

창업비란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을 개시하기 까지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 이 창업비 또한 비용으로서 상각처리 한다.

이상 설명한 이연자산의 상각처리에 대해서 현행 세법상 규정은 당해 회계년도에 일시로 상각처리하드라도 일단 이연자산계정에 포함시켰다가 비용으로서 상각처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회계년도에 상각 처리하든가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상각처리하든가 하는 것은 기업체의 자유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